

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블록딜공모주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변경시행일 : 2021.12.29
3. 주요 정정사항 : 투자신탁보수 인하, 최근 결산기 기준 정정(투자위험등급 변경)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[신탁계약서] : 투자신탁보수 인하,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단기사채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)를 포함하고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</u>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2. <생략></p> <p>3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4. ~ 10. <생략>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단기사채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)를 포함하고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</u>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2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4. ~ 10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③ <생략></p>	<p>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③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

<p>1. <u>대차대조표</u> 2. ~ 3. <생략> ② <생략></p>	<p>1. <u>재무상태표</u> 2. ~ 3.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39조(투자신탁보수) ① <생략>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3. <생략>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Class A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다. ~ 라. <생략> 2. Class A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00 다. ~ 라. <생략> 3. Class AG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60 다. ~ 라. <생략> 4. Class C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10.00 다. ~ 라. <생략> 5. Class C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5.00 다. ~ 라. <생략> 6. Class CG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6.50 다. ~ 라. <생략> 7. Class C-F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~ 라. <생략> 8. Class C-W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~ 라. <생략></p>	<p>제39조(투자신탁보수) ① <현행과 같음>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3. <현행과 같음>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Class A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 2. Class A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2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 3. Class AG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6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 4. Class C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6.0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 5. Class C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3.0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 6. Class CG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3.9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 7. Class C-F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~ 라. <현행과 같음> 8. Class C-W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~ 라. <현행과 같음></p>

<p>9. Class C-P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50 다. ~ 라. <생략></p> <p>10. Class C-P1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20 다. ~ 라. <생략></p> <p>11. Class C-P2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60 다. ~ 라. <생략></p> <p>12. Class C-P2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30 다. ~ 라. <생략></p> <p>13. Class S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50 다. ~ 라. <생략></p> <p>14. Class S-P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30 다. ~ 라. <생략></p> <p>15. Class A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~ 라. <생략></p> <p>16. Class C-I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4.00 나. ~ 라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9. Class C-P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7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</p> <p>10. Class C-P1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3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</p> <p>11. Class C-P2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8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</p> <p>12. Class C-P2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4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</p> <p>13. Class S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5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</p> <p>14. Class S-P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80 다. ~ 라. <현행과 같음></p> <p>15. Class A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~ 라. <현행과 같음></p> <p>16. Class C-I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40 나. ~ 라. <현행과 같음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/u></p> <p>이 신탁계약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p>
--	---

[[간이]투자설명서] : 투자신탁보수 인하, 최근 결산기 기준 정정(투자위험등급 변경)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 사항 반영 등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투자신탁보수 인하, 투자위험 등급 변경, 정기 갱신 등	-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: 4등급	- 실제 수익률 변동성 : 5등급 - 투자신탁보수 인하관련 2부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참조 - 총보수·비용 추가 등 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신설>	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X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	-	- 투자신탁보수 인하, 투자위험등급 변경(4등급 → 5등급)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 현재 갱신	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	<p>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전자단기사채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)를 포함하고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</p> <p>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	<p>- 채권 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단기사채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)를 포함하고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</u>)</p> <p>-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설정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변경	-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: 4등급	- 실제 수익률 변동성 : 1.1%(5등급)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	<p>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공고</p> <p>· 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.....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	<p>-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공고</p> <p>· 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투자신탁보수 인하	<p>- 운용보수 : 0.40</p> <p>- 판매보수 : A(0.40), A-e(0.20), A-G(0.26), C(1.00), C-e(0.50), C-G(0.65), C-P1(0.45), C-P1e(0.22), C-P2(0.46), C-P2e(0.23), S(0.25), S-P(0.13)</p>	<p>- 운용보수 : 0.24</p> <p>- 판매보수 : A(0.24), A-e(0.12), A-G(0.16), C(0.60), C-e(0.30), C-G(0.39), C-P1(0.27), C-P1e(0.13), C-P2(0.28), C-P2e(0.14), S(0.15), S-P(0.08)</p> <p>* 보수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끝>.